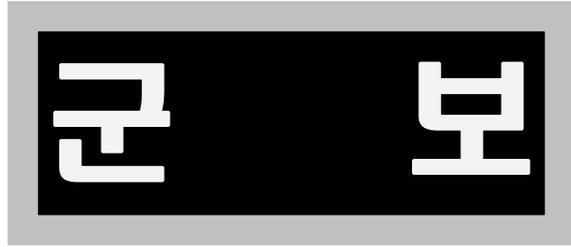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27호 2021. 8. 02.(월)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예 규】

- 고창군 예규 제9호 고창군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예방지침 1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1-99호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2
- 고창군 고시 제2021-100호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5
- 고창군 고시 제2021-103호 2021년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19
- 고창군 고시 제2021-104호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22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270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7
- 고창군 공고 제2021-1273호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31

【휘 보】

- 2021 종합민원과 신축신고-6 (2021.7.23.) (해리면 박영자)도로지정 32

회 람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19일

고창군 예규 제 9 호

고창군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창군수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소속 구성원과 고창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여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업무담당자와 사건 조사자 및 심의·의결권자는 조사과정 및 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여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원의 책무) 고창군 소속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여성폭

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2차 피해 사건 접수)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군수가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사건 조사) ① 군수는 여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제2호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고창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창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추가 위촉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군수는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상담종결	일자	사유	고충사건으로 접수 처리일자 및 결과	회신 일자	이름	확인

고창군 고시 제 2021-99호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일

①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원지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165,371.50	-	165,371.50	전라북도고시 2010-171호 2010.07.09	계획 관리 지역

②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총괄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m ²)	구성비 (%)		건 축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산정용)	
합계	-	-	165,371.5	100.0	100.0	4,557.79	4,604.37 증+ 46.58	6,442.38	6,463.60 (6,075.60) 증+ 21.22	
유희 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1,316.3	0.8	0.8	-	-	-	-	
휴양 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취사장, 야유회장	숙박시설, 야영장, 취사장, 야유회장	16,382.0	9.9	9.9	413.07	413.07	473.15	473.15 (473.15)	
특수 시설	식물원	식물원	3,439.8	2.1	2.1	987.00	1,033.58 증+ 46.58	987.00	1,008.22 (1,008.22) 증+ 21.22	커피공방
편익 시설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및 창고,	12,944.8	7.8	7.8	1,263.53	1,263.53	1,913.13	1,913.13 (1,669.83)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산정용)	
	매점, 일반목욕장, 매점	일반목욕장, 매점								
관리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64,232.2	38.8	38.8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기타시설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15,719.1	9.5	9.5	1,688.19	1,688.19	2,863.10	2,863.10 (2,718.40)	
녹지시설	녹지	녹지	51,337.3	31.1	31.1	-	-	-	-	

2. 세부조성계획조사

시설구분	변호	세부시설명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면적(㎡)						건축물 높이(층)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용적률산정용)			
총계					165,371.5	100.0	4,557.79	증)46.58	4,604.37	6,442.38	증)21.22	6,463.60 (6,075.60)	-	-	
유희시설	소계	소계	1,316.3	0.8	-	-	-	-	-	-	-	-	-	-	
	1-1 어린이놀이터	1-1 어린이놀이터	1,316.3	0.8	-	-	-	-	-	-	-	-	-	-	
휴양시설	소계	소계	16,382.0	9.9	413.07	-	413.07	473.15	-	473.15(473.15)	-	-	-	-	
	3-1 숙박시설	3-1 숙박시설	4,683.2	2.8	362.80	-	362.80	422.88	-	422.88(422.88)	2	2	-	-	
	3-2 야영장1	3-2 야영장1	5,426.5	4.2	-	-	-	-	-	-	-	-	-	-	
	3-3 야영장2	3-3 야영장2	5,236.2	3.2	-	-	-	-	-	-	-	-	-	-	
	3-4 취사장	3-4 취사장	137.1	0.1	50.27	-	50.27	50.27	-	50.27(50.27)	1	1	-	-	
	3-5 야유회장	3-5 야유회장	899.0	0.5	-	-	-	-	-	-	-	-	-	-	
특수시설	소계	소계	3,439.8	2.1	987.00	증)46.58	1,033.58	987.00	증)21.22	1,008.22(1,008.22)	-	-	-	-	
	4-1 식물원	4-1 식물원	3,439.8	2.1	987.00	증)46.58	1,033.58	987.00	증)21.22	1,008.22(1,008.22)	1	1	-	-	커피공방
편의시설	소계	소계	12,944.8	7.8	1,263.53	-	1,263.53	1,913.13	-	1,913.13(1,669.83)	-	-	-	-	
	5-1 일반음식점 및 매점	5-1 사무실및 창고	1,799.5	1.1	334.00	-	334.00	434.00	-	434.00(434.00)	2	2	-	-	
	5-2 매점	5-2 매점	1,615.1	1.0	300.00	-	300.00	300.00	-	300.00(300.00)	1	1	-	-	
	5-3 일반목욕장	5-3 일반목욕장	9,530.2	5.7	629.53	-	629.53	1,179.13	-	1,179.13(935.83)	2	2	-	-	
관리시설	소계	소계	64,232.2	38.8	206.00	-	206.00	206.00	-	206.00(206.00)	-	-	-	-	
	도로	도로	23,000.7	13.8	-	-	-	-	-	-	-	-	-	-	
	6-1 주차장1	6-1 주차장1	1,191.3	0.7	-	-	-	-	-	-	-	-	-	-	
	6-2 주차장2	6-2 주차장2	3,288.4	2.0	-	-	-	-	-	-	-	-	-	-	
	6-3 주차장3	6-3 주차장3	10,987.3	6.6	-	-	-	-	-	-	-	-	-	-	
	6-4 주차장4	6-4 주차장4	192.4	0.1	-	-	-	-	-	-	-	-	-	-	
	6-5 화장실1	6-5 화장실1	312.9	0.2	100.54	-	100.54	100.54	-	100.54(100.54)	1	1	-	-	
	6-6 화장실2	6-6 화장실2	321.7	0.2	55.19	-	55.19	55.19	-	55.19(55.19)	1	1	-	-	
	6-7 중앙광장	6-7 중앙광장	15,192.9	9.2	-	-	-	-	-	-	-	-	-	-	
	6-8 진입광장1	6-8 진입광장1	2,110.0	1.3	-	-	-	-	-	-	-	-	-	-	
	6-9 진입광장2	6-9 진입광장2	113.6	0.1	-	-	-	-	-	-	-	-	-	-	
6-10 이벤트광장	6-10 이벤트광장	2,142.1	1.3	-	-	-	-	-	-	-	-	-	-		

	6-11	상징광장	6-11	상징광장	4,599.3	2.8	-	-	-	-	-	-	-	-
	6-12	잔디광장	6-12	잔디광장	640.8	0.4	-	-	-	-	-	-	-	-
	6-13	관리동	6-13	관리동	138.8	0.1	50.27	-	50.27	50.27	-	50.27(50.27)	1	1
	소 계		소 계		15,719.1	9.5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2,718.40)	-	-
기타 시설	7-1	웰빙식품 센터	7-1	웰빙식품 센터	11,558.7	7.0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2,718.40)	2	2
	7-2	계 류	7-2	계 류	2,933.1	1.8	-	-	-	-	-	-	-	-
	7-3	벽 천	7-3	벽 천	382.7	0.2	-	-	-	-	-	-	-	-
	7-4	배수지	7-4	배수지	844.6	0.5	-	-	-	-	-	-	-	-
녹지 시설	8-1	녹 지	8-1	녹 지	51,337.3	31.1	-	-	-	-	-	-	-	-

3.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2	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변경 -기 정: 987.00㎡ -변 경 :1,033.58㎡ - 증)46.58㎡ ◦ 연면적변경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기 정: 987.00㎡(987.00㎡) -변 경 :1,008.22㎡(1,008.22㎡) -증)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보다 나은 고창의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과 관광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분자테마유원지의 조성계획변경 (유원지내세부시설 : 식물원의 사무실과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4.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복분자테마유원지) 지구내도로 조서

: “변경없음” , “실음생략”

③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고창군 고시 제2021-100호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산림공원과(063-560-2597),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21년 7월 일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월곡리, 교촌리 일원	149,625	-	149,625	전북고시 제31호 (‘10.2.12)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 “해당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층수 제한 내용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 구	고창읍 월곡리, 교촌리 일원	4층 이하	149,625	-	149,625	전라북도고시 제2013-114호 (2013.5.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	6,316.0	-	6,316.0	-	
기정	⑰	녹지	완충녹지	월곡리 979번지	3,603.1	-	3,603.1	2011.04.05	
기정	⑱	녹지	완충녹지	월곡리 981번지	595.1	-	595.1	2011.04.05	
기정	⑲	녹지	완충녹지	월곡리 983번지	2,117.8	-	2,117.8	2011.04.05	

(2)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	43,323.9	-	43,323.9	-	
기정	⑭	월곡1	근린공원	월곡리 1009번지	42,485.1	-	42,485.1	2011.04.05	도로 740m ² 중복 하천 11,342m ² 중복
기정	⑮	월곡2	소공원	월곡리 985번지	838.8	-	838.8	2011.04.05	-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금회변경”

① 월곡1 근린공원

1.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

시설 구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건축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2,485.1	42,485.1	100.0	100.0	-	33	시설률 : 28.3%
도로및광장	10,664	10,664	25.1	25.1	-	-	도로 32개노선, 광장(진입/휴게/잔디) 14개소
조경 시설	590	590	1.4	1.4	-	-	잔디밭 1개소
유희 시설	511	511	1.2	1.2	-	-	어린이놀이터 1개소
편익 시설	-	170	-	0.4	-	33	금회 신설 “화장실”
운동 시설	79	79	0.2	0.2	-	-	운동시설 1개소
기타 시설	30,641.1	30,471.1	72.1	71.7	-	-	녹지, 하천

2.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m ²)		구 성 비(%)		건축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42,485.1	42,485.1	100.0	100.0	-	33.0	시설률 : 27.9%
도로 및 광장	소 계	10,664	10,664	25.1	25.1	-	-	-
	도로	3,575	3,575	8.4	8.4	-	-	32개 노선
	광장	7,089	7,089	16.7	16.7	-	-	14개소
조 경 시 설	소 계	590	590	1.4	1.4	-	-	-
	잔디밭	590	590	1.4	1.4	-	-	1개소
유 희 시 설	소 계	511	511	1.2	1.2	-	-	-
	어린이 놀이터	511	511	1.2	1.2	-	-	1개소
편 익 시 설	소 계	-	170	-	0.4	-	33.0	-
	화장실	-	170	-	0.4	-	33.0	-
운 동 시 설	소 계	79	79	0.2	0.2	-	-	-
	운동시설	79	79	0.2	0.2	-	-	1개소
기 타 시 설	소 계	30,641.1	30,471.1	72.1	71.7	-	-	-
	녹지	30,641.1	30,471.1	72.1	71.7	-	-	녹지, 하천

3. 공원 세부시설별 위치 및 시설 규모 결정(변경) 조서

시설 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m ²)		구성비 (%)	건축 면적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42,485.1	42,485.1	100.0	33.0		
도로 및 광장	소 계								10,664	10,664.0	25.1	-	
	-	-	도 로	도 로					3,575	3,575.0	8.4	-	32개 노선
	1-1	1-1	진입광장1	진입광장1	250-4답 일원	1009공 일원	308	308.0	0.7	-			
	1-2	1-2	진입광장2	진입광장2	183답 일원	1010공 일원	320	320.0	0.8	-			
	1-3	1-3	진입광장3	진입광장3	507답 일원	1010공 일원	89	89.0	0.2	-			
	1-4	1-4	진입광장4	진입광장4	529-2전 일원	1011공 일원	516	516.0	1.2	-			
	2-1	2-1	휴게광장1	휴게광장1	490-5전 일원	1008공 일원	113	113.0	0.3	-			
	2-2	2-2	휴게광장2	휴게광장2	485-2답 일원	1009공 일원	1,853	1,853.0	4.4	-			
	2-3	2-3	휴게광장3	휴게광장3	485-2답 일원	1009공 일원	393	393.0	0.9	-			
	2-4	2-4	휴게광장4	휴게광장4	184답 일원	1010공 일원	436	436.0	1.0	-			
	2-5	2-5	휴게광장5	휴게광장5	483답 일원	1009공 일원	36	36.0	0.1	-			
	2-6	2-6	휴게광장6	휴게광장6	484답 일원	1009공 일원	63	63.0	0.2	-			
	2-7	2-7	휴게광장7	휴게광장7	484답 일원	1009공 일원	40	40.0	0.1	-			
	3-1	3-1	잔디광장1	잔디광장1	487답 일원	1009공 일원	1,034	1,034.0	2.4	-			
	3-2	3-2	잔디광장2	잔디광장2	485-2답 일원	1009공 일원	950	950.0	2.2	-			
3-3	3-3	잔디광장3	잔디광장3	525-1답 일원	1011공 일원	938	938.0	2.2	-				
조경 시설	소 계								590	590.0	1.4	-	
	4	4	연 못	잔 디 밭	558-5구 일원	980공 일원	590	590.0	1.4	-			
유희 시설	소 계								511	511.0	1.2	-	
	5	5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525답 일원	1011공 일원	511	511.0	1.2	-			
편익 시설	소 계								-	170.0	0.4	33.0	
	-	6	-	화장실	-	1008공 일원	-	170.0	0.4	33.0	금회 신설		
운동 시설	소 계								79	79.0	0.2	-	
	6-1	7-1	운동시설	운동시설	525답 일원	1011공 일원	79	79.0	0.2	-			
기타 시설	소 계								31,325	30,163.1	71.7	-	
	7	8	녹 지	녹 지	-	-	31,325	30,163.1	71.7	-	녹지. 하천		

② 월곡2 소공원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③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고창군 고시 제 2021-103호

2021년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태풍 내습시 소형어선에 대한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나. 근거법령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복지향상 지원)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

○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다. 사업기간 : 2021년 7월 ~ 12월

라. 사업비 : 5,000천원 (도비 1,500 균비 3,500)

마. 사업량

(단위 : 척, 천원)

구 분	사업량	계(100%)	국비(-)	도비(30%)	균비(70%)	자담(-)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	50	5,000		1,500	3,50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바. 사업내용

○ 태풍 내습시 소형어선(3톤 미만)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3톤 미만의 어업허가 어선을 가진 어업인

※ 연근해어업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3. 지원기준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 보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

- 우리나라 직·간접 영향권 태풍 어선 1척당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
 - 본인 소유 어선 2척 이상도 지원신청 가능
- 크레인 인양 상·하가 구분없이 총 인양비 기준

4.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1. 07. 21 ~ 07. 30. (10일간)
-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4층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방문 접수)

5. 기타사항

- 가.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 허위 및 거짓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560-2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고 창 군 수

고창군 고시 제2021 - 104호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3.

고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항시설 현대화 및 어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
 - 동호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종합적인 특화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해양관광기반시설 정비필요
 - 동호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개발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11,284백만원(국비 7,899, 지방비 3,385)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포구정비, 물양장설치, 주차장조성, 어구보관창고 등
 - 특화사업 : 동호동굴복원, 노을전망쉼터, 어촌복합센터, 경관조명, 마을정주환경개선, 마을특화사업장, 관광객체험장, 마을전시관, 당산정비, 소공원조성, 해안둘레길 조성등
 - S/W사업 : 지역협의체 운영및관리,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 및 컨설팅, 선진지견학,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나. 사업의 구역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동호항 일원

5. 사업예정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어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어업환경개선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 동호항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 노을전망쉼터 및 주차장조성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 동호동굴 복원 및 관광객 체험장 조성 등 동호항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로 동호항 관광명소화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7.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9. 기 타

-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63-560-263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시행계획 세부내역

구분	시행계획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① 공통사업	어항 구역 개선	외곽시설	포구정비	270m	200	140	60	-	-
		계류시설	물양장	965㎡	290	203	87	-	-
		기능편익시설	주차장	2개소	300	210	90	-	-
			어구보관창고	260㎡	400	280	120	-	-
	① 소계				1,190	833	357	-	-
② 특화사업	지역 특화	특화시설	동호터널복원	70m	2,350	1,645	705	-	-
			노을전망쉼터	1식	70	49	21	-	-
	관광 문화	문화·복지	어촌복합센터	260㎡	850	595	255	-	-
			경관개선	경관조명	1식	370	259	111	-
		당산정비		4개소	200	140	60	-	-
		소공원조성		340㎡	120	84	36	-	-
	주거개선	마을정주환경개선	1식	300	210	90	-	-	
	지역 소득 증대	소득기반	마을특화사업장	780㎡	1,650 <97>	1,155	495	97	-
		레저·체험	체험센터및마을전시관	369㎡	1,150 <36>	805	345	36	-
		휴식·휴양	해안둘레길	220m	1,200	840	360	-	-
② 소계				8,260 <133>	5,782	2,478	-	-	
③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주민교육등	1식	202	141	61	-	-
		홍보	홈페이지구축등	1식	90	63	27	-	-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등	1식	120	84	36	-	-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1식	43	30	33	-	-
	고용창출		사무장 채용등	1식	45	32	13	-	-
	③ 소계				500	350	150	-	-
④ 사업지원	설계비	공통 및 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식	343	240	103	-	-
	감리비,보상비	공통 및 특화사업	감리비,보상비 측량수수료등	1식	991	694	297	-	-
	④ 소계				1,334	934	400	-	-
어촌뉴딜 합계(①+②+③+④)					11,284 <133>	7,899	3,385	-	-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리						
1	고창군	해리면	동호	550	대	648	648	구동호마을회	어촌복합센터
2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7-3	대	39	39	고창군	
3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7-2	대	357	357	동호어촌계	
4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7	대	88	88	고창군	
5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8-3	대	7	7	고창군	
6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6-1	대	169	169	고창군, 오*성	
7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6-2	도	212	212	고창군, 오*성	
8	고창군	해리면	동호	544-4	대	10	10	김*옥	
9	고창군	해리면	동호	659-5	잡	8,080	360	전라북도	마을특화사업장
10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6-1	잡	1,497	1,497	고창군	체험센터, 마을전시관, 주차장
11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6-3	잡	103	103	고창군	
12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7-2	전	1,467	1,467	고창군	
13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7-6	전	135	135	박*혁	
14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5-1	대	425	425	구동호마을회	
15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5-3	도	64	64	구동호마을회	
16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5-4	대	51	51	구동호마을회	
17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5-6	도	148	148	구동호마을회	
18	고창군	해리면	동호	615-56	도로	229	229	고창군	주차장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리						
19	고창군	해리면	동호	649-2	답	3,282	3,282	고창군	어구보관창고, 주차장
19	고창군	해리면	동호	649-29	전	106	106	최*환	
20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9	임	542	542	구동호마을회	
21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7	임	857	857	고창군	동굴복원
23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8	전	205	205	김*렬	
24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4	전	793	793	고창군	
25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1	전	160	160	고창군	해안둘레길 전망공원
26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1-3	임	4,358	4,358	국(산림청)	
27	고창군	해리면	동호	659-4	임	2,655	2,655	국(산림청)	
28	고창군	해리면	동호	659-14	임	132	132	국(산림청)	
29	고창군	해리면	동호	659-13	임	25	25	국(기획재정부)	
30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3-1	전	303	303	고창군	
31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9-1	전	59	59	고창군	
32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0-1	전	323	323	고창군	
33	고창군	해리면	동호	691-1	전	84	84	고창군	
34	고창군	해리면	동호	688-4	임	239	239	고창군	
34	고창군	해리면	동호	688-6	임	31	31	고창군	
36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5	종교	96	96	고창군	당산정비
37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5-1	종교	165	165	고창군	
38	고창군	해리면	동호	704-1	전	24	24	고창군	
39	고창군	해리면	동호	589-3	전	955	600	김*금	
40	고창군	해리면	동호	537	대	311	140	김*진	
41	고창군	해리면	동호	605-12	전	438	438	고창군	소공원조성
42	고창군	해리면	동호	605-31	전	53	53	고창군	

고창군 공고 제2021-1270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2. 사업 시행자 : 고창군수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7. 19. ~ 2021. 8. 2.(15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 063-560-263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참조
6. 기 타 : 관계서류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한 세목조서

□ 공사명 :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546-1	대	169	16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송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오*성			11/13 지분
	546-2	도로	212	212					11/13 지분

(별지 2)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답변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제출의견요약		
사업시행자 답변		

※ 사업시행자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작성

고창군 공고 제2021-1273호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고창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1. 7. 19.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2021.12월 예정)

2021. 7. 19.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 로 대 장				지정번호 0000-10000	
대 지 위 치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지 번	805-1
건 축 주	박영자	주민등록번호	— — — — — 허가(신고)번호		
	박정일				
도 로 폭 이	17m	도 로 너 비	2.4m	도 로 면 적	40㎡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 련 지 번	동의면적(㎡)	동 의 일 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805-1	40	2021.07	박영자		
			박정일		
작성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

위 치 도	축척 : 1/NO
--------------	-----------



현 황 도	축척 : 1/200
--------------	------------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805-1번지
-------------	--------------------------